

운 영 규 정

제정 2019-12-19

제4장 입소계약

제1조 (계약 목적)

- ① 계약의 목적은 입소자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 대상자 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 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**기관**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
-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후 계약을 체결 한다.
- ⑦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
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급여(식대) 장기요양비용 전액 면제한다
- ⑧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8% 12% 에 적용하여 경감한다

월 이용료 등 그밖의 비용은 아래와 같다

구 분		적 용	내 역
장기요양 비용항목	공단지원금	총액의80%	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공제한 100% 중 80%를 건강보험금액을 공단에서 지급을 한다
	본인부담금	총액의20%	노인장기 요양법 40조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(식사재료비)전액면제 한다 의료수급자 등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하여 적용한다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	235.000 원	1식 2,500* 3식 * 31일 기준
	기타	본인부담	약제비 , 진료비, 각종 검사비외

제2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① 계약기간: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,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-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-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고지,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 한다 단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8조 의거 본인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
수급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2.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3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했을 때

4.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여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
5. 수급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6.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7.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

보건복지부



노인보호전문기관

어르신 **행복**을 지켜드리는 번호,
기억해주세요

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

1577-1389
또는 **110**



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

-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.
-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-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
-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-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
-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-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
노인학대의 예측 징후

-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- 다름,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
-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-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
-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.
-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
-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